브라질 영화촬영 현장 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지침





#### 한국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폭력(성폭력 포함) 예방지침마련을 위한 브라질 사례조사

영화진흥위원회 브라질 통신원 김현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7년 2월

\_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7

##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브라질 영화계 (성)폭력관련

- 1) 연출자/제작자의 연기 디렉팅 명목의 배우 터치 허용범위가 계약서상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가?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 상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실제 계약서 내용) / 2
- 2) 사전에 합의(연기 디렉팅, 연출 의도, 방식)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 3) 위 내용들과 관련한 각국 현장에서의 배우/스태프의 폭행 문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명시적 계약, 암묵적 합의, 별도의 지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된 내용 조사 / 3



#### 1. 들어가는 글

성(SEX)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브라질의 경우, 정규방송이나 여러 오락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못할 수준의 방송이나 영상물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상품화 시키는 TV 프로그램뿐 아니라 영화, 상품광고 등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유아, 청소년기 때부터 성(sex)에 대한 인식형성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몸을 완벽하게 컨텐츠화 한 생산자(감독이나 프로듀서)에게는 오히려 명성에 걸맞는 객체화였다는 평이 따르기도 한다.

브라질에서는 매일 15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고, 매 12분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공공안전부 조사보고(2016년 연통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이슈 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지만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아직 많이 있어 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영화계내 학대(성폭행,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여성감독이나 학계, 커뮤니티을 주축으로 하여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근 브라질 영화계에서는 유명 여성, 남성 배우들이 본인이 겪은 개인이 겪은 성적학대/언어폭력에 대해 본인이 느낀 감정과 트라우마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가장 따뜻한 칼라, 블루"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주인공들처럼 근로(촬영)시간의 부당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노골적인 성행위장면 등 배우로써 겪은 불리함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나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는 편이다.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약 3만여명의 브라질 영화계 여성관계자들이 가입된 Mulher no cinema (Women in the cinema)는 브라질 뿐 아니라 세계영화시장에 있는 "여성"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자극과 인식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이 활동이 변화를 위한 행동(action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온라인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태이고 성폭력, 학대 등 다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혹은 공론화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문헌조사외에 직무가 다른 (배우, 감독, 조연출, 스탭 등) 브라질 영화관계자 몇몇을 대상으로 서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언론과 서류상에 기재된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예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리 모두는 성적학대와 차별이 영화계에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들이 밝히기를 꺼려워 하는 분위기라 공론화 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응답자 답변 중 발췌)



#### 2. 조사내용

# 1) 연출자/제작자의 연기 디렉팅 명목의 배우 터치 허용범위가 계약서상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가? -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 상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실제 계약서 내용)

배우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 현 영화관계자(감독, 배우, 스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 폭력(성폭력포함)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삽입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계약서가 대개 프로덕션/감독, 즉 고용주 측에서 마련하여 배우나 스탭에게 제공되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대부분의 내용은 수익 발생시 상업적 보상 (개런티포함), 개런티 지급 지연관련사항, 촬영시간 등에 관련된 항목 위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주 측에서 제공된 문서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문서의 내용수정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구두로만 의견을 나누고, 서명하여 바로 계약이 진행되는 형태이다. 다만, 유명배우의 경우에는 개인변호사를 따로 두고 계약사항 대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변호사(법인) 고용비용이 높기에 대부분의 배우들은 고용주 측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수동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배우의 연기지도를 위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문서)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고, 구두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피고용자인 배우나 스탭입장에서 촬영 도중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 하여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 2) 사전에 합의(연기 디렉팅, 연출 의도, 방식)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 브라질 여배우 중 가슴노출신이 영화내용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려다 내부 촬영스탭이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코멘트를 주어 파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영화 내용(시놉시스)에 자세한 내용이나 촬영계획, 연기스타일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감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촬영스탭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계약(문서)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따라 양자간에 동등한 시선에서 사전합의가 이뤄지기 쉽지않고 협의는 대개 구두를 통한 소통으로 정리되는 방식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배우의 경우, 사전에 적극적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워 대개 수긍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배우는 필요하다면 계약사항에 폭력부분이나 연기 디렉팅 등에 본인의 의견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계약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 3) 위 내용들과 관련한 각국 현장에서의 배우/스태프의 폭행 문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명시적 계약, 암묵적 합의, 별도의 지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된 내용 조사

아동에 대한 조항이 영화촬영 중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적대상로써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아역배우에게 법규가 묘사한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에는 아래 와 같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아동폭력 관련 법 (일반)

2008년 11월 25일 법 No. 11,829를 재정하여 소아성애가 범죄화 되지않도록 해당법률을 세분화시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법적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 240 조에 따르면 어떤 방법 으로든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노골적인 성행위나 음란물 장면을 제작, 복제, 감독, 사진 촬영, 영화 촬영 또는 등록하는 행위는 4 년에서 8 년의 유죄 판결로 처벌된다.

아동을 제외한 성인 배우나 스태프간의 폭행문제가 붉어지더라도 외부(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에는 최근 유명배우들의 성폭력(성희롱포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영화계에서 함께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과 공론화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영화 스탭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기위한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다.

작년기준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영화계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20%, 2015년 14%에서 많이 증가한 추세이지만 아직도 대부분 촬영현장에는 남성 감독과 스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적농담이 포함된 대화를 공적인 자리에서 주고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를 대하는 여배우/여성스탭들은 유별나지 않은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길 바라는 압묵적 합의 같은 게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프로덕션 분야 중 아트 디렉션(프로덕션 디자인), 의상,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가 많은 편으로 팀워크가 좋은 편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카테고리에 따라 현장분위기, 성별에 대한 인식과표현의 정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뷰를 진행한 5명의 관계자 모두 브라질 영화계에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여성응답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성희롱(가벼운 성적농담포함)은 이미 만연하여 이를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신체적인 학대와 명예훼손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대 종류에 포함된 언어폭력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능력을 절하하는



표현이 많았고, 핵심포지션에 여성인력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한국 영화현장에서의 벌어지는 비슷한 맥락의 학대형태이다. (여성 이라는 이유로 노동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표현 사용,

브라질 여성영화인만을 위한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조치를 위해 법규화된 Penha의 메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 여성폭력 관련 법 (연방법)

브라질은 여성에 대한 국내 및 가정 폭력을 억제하고 방지하기위한 법안을 국가 규범 적 상황에 도입하는 특별법을 승인 한 라틴 아메리카의 마지막 국가 중 하나 였지만, Penha의 메리 법 (Mary Law of Penha)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Law No. 11,340 / 2006 - 유엔 (UN)이 가정 폭력과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수한 법률로 인정받고 있다.

#### <자료조사, 출처>

Cinema a dois <u>www.cinemaadois.com.br</u>

Mulher no cinema <u>www.mulhernocinema.com</u>

Compromisso e Atitude <u>www.compromissoeatitude.org.br</u>

Library of Congress <u>www.loc.gov</u> (Child Right in Brazil)

SciELO Brazil(The Scientific Electronic Library Online) <u>www.scielo.br</u>
인터뷰 총 7인

(브라질 영화감독 2인, 한국영화감독 1인, 아트디렉션 1인, 배우 2인, 의상 1인)